



한옥정책 **브리프** hanok policy brief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방향

신치후 부연구위원, 김가람 연구원

요약

-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조성을 통해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건축자산의 현황과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9개의 항목을 조례로 위임함
- 지자체별로 최적의 조례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건축자산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사업실행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문구성의 방향과 예시를 제안함

정책제안

- 건축자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관련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함
- 제도수립 시 신축한옥, 기존한옥, 근대건조물, 지역경관 등 지역건축문화 특성을 고려한 보존·활용·정비 등의 세부기준과 다각적 지원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수립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정책수요를 선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함

1.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¹의 제정 목적 및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

■ 법 제정 배경

- 개발에서 보전·관리 및 재생으로 도시건축정책 패러다임이 변화
- 건축자산이 관광문화자원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지역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건축자산의 효용가치가 증대
- 건축자산 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무분별한 훼손·멸실의 위기에 처하는 건축자산이 증가

■ 법 제정 목적 및 기대효과

-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전·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국가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법에서 정하는 조례 위임사항

- 법은 규제가 아닌 진흥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조례의 내용이 중요해짐
- 법상 ‘조례로 정하는’ 이라고 명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조례를 구성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추가 구성 가능
- 총 9개 항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구체적 지원 대상, 한도액, 절차 등을 지역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게 함
- 기존 한옥 및 근대건조물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례의 일부 항목에 대한 개정 및 신설에 대한 검토 필요

표 1.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

항목	위임 내용	근거 법령
건축자산의 진흥기반 마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변경	영 ² 제3조제5항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영 제6조제1항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우수건축자산의 지원·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법 제12조제2항
	우수건축자산 특례적용계획서 추가 포함내용	법 제14조제2항제5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영 제14조제4항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법 제23조제4항
한옥의 진흥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 및 범위	영 제17조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법 제31조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32조제3항

1 이하 ‘법’이라고 한다.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



2.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사항

■ 총칙

- ‘한옥’, ‘건축자산’의 법률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작성
 - 대상, 행위 등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가급적 법률용어 사용을 원칙으로 함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들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그림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범주



-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한옥 및 근대건조물 관련 조례와 관계를 고려
 - ‘제○○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목에서 관련 조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표 2. 총칙 조문 예시

조례제정 예시
기본구성항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도 내의 건축자산 및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옥마을”이란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으며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2.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한옥을 이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위한 한옥체험업 등을 말한다.
제4조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선택구성항목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옥마을”이란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으며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2.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형 한옥민박사업 등을 말한다. <p>[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수선 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9호의 대수선(한식 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4. “소유자”란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5. “외관”이란 건축물의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한다. <p>[서울특별시 한옥지원 조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내부”란 설비, 부엌, 화장실, 목욕실, 내벽 등을 말한다.
제○○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자산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건축자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 시·도지사는 매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 지역 문화 및 건축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

(영 제3조제5항,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변경)

-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지자체 여건에 맞게 경미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 가능

(영 제6조제1항,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자³ 중, 지자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건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지역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내 사업자를 우선 선정 가능
 - 추가로 관련 사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실적 조건을 추가할 수 있음

표 3. 건축자산의 진흥기반 마련 조문 예시

조례제정 예시
기본구성항목
제5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변경)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절차)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주소지가 ○○시·도 에 위치한 사업자 2. 사업장의 주소지가 ○○시·도와 인접한 구·군에 위치한 사업자
선택구성항목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절차) ①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주소지가 ○○시·도 에 위치한 사업자 2. 사업장의 주소지가 ○○시·도와 인접한 구·군에 위치한 사업자 ②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인력 운영계획 4. 사업 예산계획 5.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 6. 향후 기대효과 및 건축자산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④ 지원여부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운영되는 건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⑤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업 등록을 한 자,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자,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



- 사업 운영자금의 지원 시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 및 용자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하거나 관련 절차를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음
 - 사업운영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 제6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심사내용과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위해선 건축자산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필수적임
 - 건축자산의 소유자가 보존과 활용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

(법 제12조제2항, 우수건축자산의 지원·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 시 작성 및 첨부해야할 내용, 세부 지원절차, 별칙 등을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도록 수정 및 추가 가능
- 우수건축자산의 리모델링을 포함한 수선, 외관 및 내부 수선 등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정하는 행위가 없는 경우 공란처리 가능
 - 신고대상으로 정하는 사항과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신고대상 및 절차로 정해야 할 건축 수선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 필요

(법 제14조제2항, 우수건축자산 특례적용계획서 추가 포함내용)

- 특례적용 시 주변 건축·도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
 -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 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 관련 첨부해야할 서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표 4.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조문 예시

조례제정 예시
기본구성항목
<p>제7조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①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등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p>③ 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소유자에게 「○(시)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 (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 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과 주변 건축물이 표시된 배치도, 종·횡단면도, 입면도 3. 특례적용 시 주변대지와 대상건축물과의 관계에 관한 현황설명자료 4. 그 밖에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선택구성항목 (우수건축자산의 지원·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p>제7조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①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등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p>③ 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선 등의 경우(리모델링 포함): 총 공사비의 ○분의 ○ 범위에서 최대 ○○○○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2. 외관 및 내부 수선: 총 공사비의 ○분의 ○ 범위에서 최대 ○○○○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p>⑤ 동일 우수건축자산의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항제1호에 의한 경우: 20년 경과 후 신청 시 2. 제4항제2호에 의한 경우: 5년 경과 후 신청 시 <p>제8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p> <p>제9조 (지원시기) 시·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액을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옥 시공업체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 부양을 위한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이 필요할 때 <p>제1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p>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우수건축자산 주변의 경관 관리와 함께 마을·가로 등에 군집되어 집합적 가치를 지니는 건축 및 도시 환경의 관리를 위해 도입
-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가능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에 의한 신청도 가능함

(영 제14조제4항,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 법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안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지자체 조례로 관리계획에서 중요하다고 지정된 내용의 변경 시 영 제14조제1항부터 영 제14조제3항까지 명시된 절차를 거쳐야 함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중요한 사항을 정하되 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재산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고려
 - 법 제19조제1항의 각 호에 명시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지자체가 판단할 때 중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지정 가능

표 5.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문 예시

조례제정 예시
기본구성항목
<p>제1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등)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안에서의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p>제1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① 시장·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부시장·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2. 시도 의회의원 3. 지역주민 4. 시민단체 5.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③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선택구성항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p>제1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① 시장·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부시장·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2. 시도 의회의원 3. 지역주민 4. 시민단체 5.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③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12조 (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p> <p>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법 제23조제4항,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 협의체는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함
- 협의체 운영의 세부지침은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음
 - 기존에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관련 협의체 및 위원회 운영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 주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협의체 구성 가능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 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32조제3항,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지원)

- 지역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정함
 - 사업 및 활동 등 지원 대상의 선정은 공개공모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지원 한도액의 규모 및 지원범위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6.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 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 예시

조례제정 예시
<p>「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②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3.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3. 조례 제정 시 한옥 관련 검토사항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내용·범위

- 법에서 정하는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로 새롭게 조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함

(법 제32조제3항,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 및 범위)

- 한옥에 대한 비용지원이 가능한 건축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
 - 신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 등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혼선을 방지



- 내·외부 수선 등은 법률용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용어기준과 총칙에서 정의가 필요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비용지원 범위 마련
 -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기존 지자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준용 가능함
- 수선 등 관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기존 ‘한옥등록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우수건축자산’관리를 위한 지원 방법 및 범위와 관계를 고려
 - 한옥 자체가 건축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지므로, 한옥을 우수건축자산으로도 지정하여 관리비용의 지원이 가능
 - 중복 등록 및 지원의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표 7. 한옥지원에 대한 조문 예시

조례제정 예시
<p>[서울특별시 한옥지원 조례],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경상남도 한옥지원 조례]</p> <p>제○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 소유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또는 용자지원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용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옥 신축(개축 포함) : 총 공사비의 ○분의 ○범위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보조 또는 최대 ○천만 원까지 용자지원 2. 대수선(한식 기와 잇기 등) : 총 공사비의 ○분의 ○범위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용자지원 3. 한옥 외관 및 내부 수선 : 총 공사비의 ○분의 ○범위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용자지원 <p>③ 시·도지사는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는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하는 한옥 소유자들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한도액의 ○분의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 또는 용자지원 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는 한옥보존시범마을 내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용자금만 지원할 수 있다.</p> <p>⑤ 보조금과 용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을 용자금으로 지원하되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⑥ 시·도지사는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한옥에 대해서는 제2항의 한도액의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 및 용자지원을 할 수 있다.</p> <p>⑦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17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p>
<p>제○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p>② 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p>
<p>제○조(한옥의 매수) 시·도지사는 전통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을 매수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표 8. 한옥 등록제의 실시 관련 조문 예시

조례제정 예시
<p>[서울특별시 한옥지원 조례] 제○조(등록)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들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한옥의 등록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조(등록의 취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한 경우</p>
<p>[서울특별시 한옥지원 조례] 제○조(등록대상) 시·도지사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p>

■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법 제31조,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 법 제31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각 지자체 별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한옥건축양식 관련 사업을 정하여 육성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국가 및 지자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공공건축물 건축사업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할 경우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법 제31조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거나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2.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설계기법 및 모델의 개발·보급 사업
3.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 9. 한옥 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관련 조문 예시

조례제정 예시
<p>제○조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① 법 제31조에 따라 한옥건축양식 보급을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홍보관·사무소, 문화시설 등의 실내외 공간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조성하는 사업 2. 한옥이 아닌 건축물을 한옥건축양식으로 적용하여 증축·개축·재축 또는 신축하는 사업 3. 그 밖에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p>



4. 조례 제정의 방향 및 제언

■ 건축자산 진흥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기반 마련

- 정부의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선행해야함
- 현재 건축자산 관련 통계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한옥,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 통계자료 구축 방법 등의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함

■ 한옥 등 건축자산의 대상에 따른 지원항목의 차이를 고려

표 10. 한옥 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대상	근거법령	지자체 지원가능 항목
우수건축자산	법 제12조 법 제14조	- 조세감면 - 관리에 필요한 기술, 소요비용 지원 - 증축·개축·재축·대수선 시 관계법령의 특례
한옥	법 제24조 법 제26조	- 한옥 건축 시 관계법령의 특례 - 한옥 건축에 필요한 기술, 보조금 지원 ※건축: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건축법 제2조)

- 법률에서 한옥, 우수건축자산 등 대상에 따라 지자체 지원가능 세부 항목에 차이점이 있음
 - 법률에서 명시된 지원항목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이 필요
-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활용 측면에서의 홍보, 건축문화교육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
 - 지역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사업체 지원 가능

■ 건축자산의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건축자산과 관련된 기존 조례와 관계 고려
- 지역 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조례에 포함
 - 한옥 신축이 필요한 지역, 기존한옥의 보존이 우선인 지역, 근대건조물이 다수 남아 있는 지역 등 지역별 건축자산의 특성이 다양
 - 이를 고려한 지원방법(신축·수선),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 마련

- 건축자산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 각 지역에서 조례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협의체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표 11. 건축자산 관련 기존 지자체 조례

대상	대표 조례명	주요지원내용
한옥	한옥지원조례	- 한옥 신축 및 조성 지원 - 한옥 수선비용 지원 - 위원회 설치
근대건축물	근대건축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특화거리 조성·유지를 위한 지원 - 위원회 설치
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지정된 문화유산의 보수비용 지원 - 위원회 설치
역사문화지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상권회복을 위한 수선비·임대료·사업비 지원 - 문화지구 내 수선·운영비 용자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예측되는 정책수요를 선도적으로 반영

- 한옥마을을 선호하는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도록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지원과 같은 다양하고 세부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지역의 전문인력양성, 관련 사업체 지원 등과 같이 지역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 다수가 이용하는 한옥 공공건축물, 한옥 공공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시킴으로써 한옥 홍보 및 인식제고 효과 기대

문의 | grkim@auri.re.kr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김대익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9 www.hanokdb.kr

